

뉴욕 주 최저 임금

2017년 12월 31일부터 2018년 12월 30일까지 뉴욕 주 기본 최저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:

- 뉴욕 시 기준 시간당 \$13.00 (직원 11명 이상 사업체)
- 뉴욕 시 기준 시간당 \$12.00 (직원 10명 이하 사업체)
- 롱아일랜드 및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기준 시간당 \$11.00
- 이외 뉴욕 주 지역 기준 시간당 \$10.40
- 패스트푸드 업계 근로자*의 최저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뉴욕 주 기준 시간당 \$13.50
- 이외 뉴욕 주 지역 기준 시간당 \$11.75

뉴욕 주에서는 (대부분의 경우) 가사 노동자를 포함한 민간 부문 피고용인들은 기본 최저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.

기본 요율은 직업에 따라 최저 임금을 정하는 “임금 조례”라는 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, 이에 해당하는 직업은 다음과 같습니다:

- 호텔 관광 산업, 건축업, 농업; 및
- 그 외 모든 산업과 직업.

임금 조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:

- 시급;
- 초과근무 수당 (농업 제외); 및
- 고용주가 제공할 경우, 식대 및 숙소비용.

규칙적으로 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, 여러 임금 조례에서 최저 시급을 낮게 조정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임금 조례는 노동부 웹 사이트 www.labor.ny.gov/minimumwage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

근로자가 근무에 필요한 유니폼을 직접 관리할 경우, 그 관리 비용을 최저 임금에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.

성과급으로 일하는 피고용인은 기본 최저 임금에 상당하는 요율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.

기본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입니다. 기본 근무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, 고용주는 기본급의 1½배 지급해야 합니다.

노동부는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 최저임금법을 어기는 고용주는 다음 사항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:

- 밀린 임금;
- 이자;
- 손해 보상 및;
- 벌금.

또한, 이들 고용주는 형사상 기소와 형벌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. 위반 벌금은 누락 임금의 200%에 달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이들 고용주는 미지급 임금의 16%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.

고용주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최저 임금 포스터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.

최저임금법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고용주는 월요일~금요일 오전 8시~오후 5시, (888) 469-7365번으로 노동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*패스트푸드 업계 근로자란, 고객 서비스, 조리, 식음료 준비, 배달, 보안, 보급품 및 장비 재고 관리, 청소 및 정기 보수 등의 업무 중 한 가지 이상을 하도록 패스트푸드 사업장 고용주가 고용하였거나, 또는 이러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.

**최저임금법 위반 시,
미지급 임금의 200% 및 이자 16%에
달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**